

의안번호	제400호
의결 연월일	2012년 10월 일 (제315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9월 2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9월 27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, 청원·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통합추진기구의 명칭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명칭변경 (안 제5조)
- 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 →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”을 “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<u>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</u>(이하 “통합추진지원단”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<u>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</u>(이하 “통합추진지원단”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⑥ (생략)